



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1 디지털 전파·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

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-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
- 전파감시, 전파교란 대응
-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
- 전파차단장치 제조·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
- 국내·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
- 불법무선국 조사·단속
-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·단속

2 전파·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

-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·단속
- 불법감청설비 조사·단속 및 탐지업 등록·관리
-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·감독
- 무선국 전자파 관리
- TV방송 수신장애 조사
- 정보보호 최고책임자(CISO) 지정·신고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
-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
-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

3 편리한 전파·방송통신 행정서비스

- 무선국 허가·검사, 방송국 검사
- 공중케이블 점검
- 방송통신사업 등록·관리
-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
-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
- 전파사용료 부과·징수
-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
-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
-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·감독

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

-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
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- 어린이 전파교실

중앙전파관리소
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
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인터넷 전자민원 emsit.go.kr

민원상담 080-700-0074 / 02-3400-2000



기관명	주소	전화번호
중앙전파관리소	(05830)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	02-3400-2000
위성전파감시센터	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	031-644-5900
서울전파관리소 - 서울북부사무소	(08249)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 (11604)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	02-2680-1700 031-849-5800
부산전파관리소	(46703)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	051-974-5100
광주전파관리소	(58214)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	061-330-6800
강릉전파관리소	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	033-660-2980
대전전파관리소 - 당진사무소	(35283)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(31754)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	042-520-4100 041-360-2800
대구전파관리소	(42043)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	053-749-2800
전주전파관리소	(55316)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	063-260-0070
제주전파관리소	(63037)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	064-740-2800
청주전파관리소	(28567)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	043-261-5811
울산전파관리소	(45013)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	052-231-8810

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,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

**불법감청설비를
판매·사용하는 것은
범죄입니다.**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중앙전파관리소

불법감청설비 판매·사용은 물론, 소지해서도 안됩니다.

불법감청설비란?

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인가 받지 않은 전자장치·기계장치 및 기타설비를 말합니다.

불법감청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전화형 도청기, 리모콘형 도청기, 마우스형 도청기, 콘센트형 도청기

어떤 처벌을 받나요?

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·수입·판매·배포·소지·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됩니다.

불법감청설비 단속사례

무선카메라



- 오디오·비디오 송수신기
-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감청설비인 1.2G 무선카메라 키트, A/V 송수신기 적발

불법감청설비 유형

대화도청기



- 무선 송신기를 이용하여 약 200mm까지 송출
- 엄지손가락 크기
- 책상 밑, 사무용품 등에 삽입하여 은폐

유선전화 감청설비



- 전화 선로, 단자함에 연결하여 전화내용을 약 200m까지 송출
- 무선 송신기와 고정 클립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가 간단



불법감청설비 신고 및 상담

☎ 080-700-0074(무료)

불법감청설비 근절을 위한 탐지업 등록제도 안내

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

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된 업체만이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을 할 수 있습니다.

등록요건

- 구비서류: 이용자보호계획, 사업계획, 기술인력현황
- 재정능력: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
- 탐지장비: 유선선로분석기, 스펙트럼분석기

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됩니다.

불법감청설비 탐지 의뢰·상담

불법감청설비탐지를 등록한 전문업체에 문의

※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(crms.go.kr)의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참조

